



국민권익위원회

국민권익위원회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(2021.1.19.~2021.2.14. 적용) 사항 안내

1.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.
2.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·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이번 설 명절 기간에 한하여(2021.1.19.~2021.2.14.)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
3. 각급 기관에서는 청탁금지법령 개정사항을 소속·산하기관에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.
4. 아울러, 보도자료, 시행령 개정안 등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어 소속 공직자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- 붙임 1. (210119)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 1부.
 2. 설명절-청탁금지법-조정(가로형) 1부.
 3. 설명절-청탁금지법-조정(세로형) 1부.
 4. (210119)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(공포) 1부. 끝.

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



수신자 공직유관단체

주무관 윤수성 청탁금지제도 전결 2021.1.19.
과 과장 유현숙

협조자

시행 청탁금지제도과-195 (2021. 1. 19.) 접수

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, (국민권익위원회, 법제처) / www.acrc.go.kr

전화번호 044-200-7703 팩스번호 044-200-7944 / yagi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부정과 반칙이 사라집니다. 내 삶이 달라집니다.